

| 보도 | 2024.11.8.(금) 석간 | 배포 | 2024.11.7.(목)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조사1국 조사총괄팀 | 책임자 | 팀 장 | 장정훈 | (02-3145-5582) |
| | 조사2국 | 책임자 | 국 장 | 장창호 | (02-3145-5650) |
| | 조사1팀 | 담당자 | 팀 장 | 이장준 | (02-3145-5653) |
| | 조사3국 | 책임자 | 국 장 | 최상두 | (02-3145-5100) |
| | 조사1팀 | 담당자 | 팀 장 | 장경필 | (02-3145-5106) |

2024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실시

- □ **상장사 임직원**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**회사 내부정보**를 **증권 거래에 이용**하여 **사익을 추구**하거나, 회사에 대규모 투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등
 -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
 - < 최근 3년간 상장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 >

(단위: 명)

| 7 8 | 2022년 | | 2023년 | | 2024.9월 | | 계 | |
|-----|-------|----|-------|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|
| T 正 | 임원 | 직원 | 임원 | 직원 | 임원 | 직원 | 임원 | 직원 |
| 코스피 | 13 | 20 | 11 | 3 | 6 | 0 | 30 | 23 |
| 코스닥 | 32 | 7 | 35 | 7 | 29 | 2 | 96 | 16 |
| 코넥스 | 1 | 0 | 6 | 3 | 0 | 0 | 7 | 3 |
| 합계 | 46 | 27 | 52 | 13 | 35 | 2 | 133 | 42 |

- □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,
 - 금년에도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원이 내부자 거래 등 임직원 관심도가 높은 주제와 주요 위반 사례를 선별하여 상장사를 직접 방문(10개사)*하여 교육할 예정입니다.
 - * 교육대상 회사는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 협회를 통해 사전 교육수요 조사를 실시(8월)하여 선정
- □ 상장사들은 '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'를 참고하시어,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등 관리·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상장사 임직원 대상 '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교육' 실시

● 도입배경 및 그간의 교육현황

- □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**불공정거래**가 **행위**가 **꾸준히 발생**함에 따라
 -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**상장사**를 **직접 방문**하여 **불공정거래 예방교육***을 실시중
 - * '22.8~9월 중 18개 상장사 교육 (방문 5사, 비대면 13사) '23.10~11월 중 13개 상장사 교육(방문 13사)

❷ '24년 실시계획

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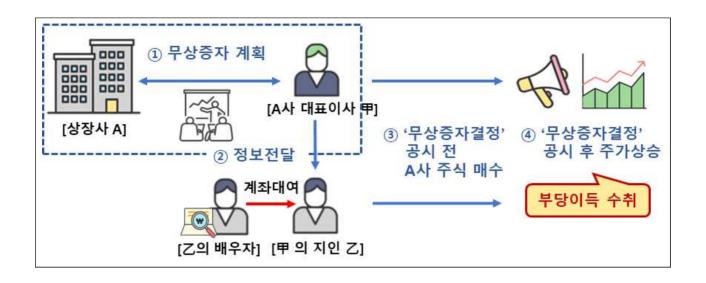
- □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하여 **상장사**를 **대상**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(8월)하였으며,
- 신청회사 중 과거 교육실시 여부, 수강인원 등을 고려하여 10개사 (코스피 4개사, 코스닥 6개사)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경험이 풍부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
- ※ 교육인원 등의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상장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개최하는 「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」의 교육 항목으로 포함하여 실시^{*}

* 광주·대전 : '24.6.11.~6.12. 旣 실시 부산·대구 : '24.9.25.~9.26. 旣 실시 서울·판교 : 4분기 중 실시 예정

- □ **임직원**들의 관심도가 높은 **미공개정보 이용**, **단기매매차익 반환** 규정 등을 주요 위반사례 및 조치사례 등과 함께 교육하여
 - 상장사 임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,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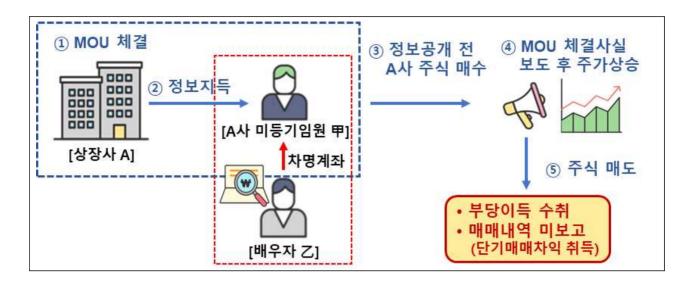
2 최근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

① 미공개정보 이용 (중요정보 전달 및 이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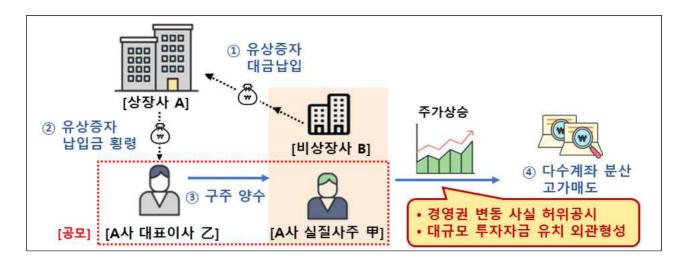
- □ 상장사 A사 대표이사 甲은 A사 영업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A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한 뒤,
 - 동 정보가 공개되면 A사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여 한국거래소 KIND에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A사 주식을 매수
- □ 또한 甲은 정보 공개 전에 투자를 같이 해온 지인인 乙에게 A사의 '무상증자결정' 정보를 전달하여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하였으며,
 - 乙은 배우자 명의 계좌를 통해 정보 공개 전 A사 주식을 매수
- ➡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- ◈ 임직원은 정보접근이 용이한 내부자로서,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 하여 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는 물론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 - 한편 '무상증자결정' 정보는 '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'에 해당할 수 있음

② 미궁개정보 이용 (중요정보이용)·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(단기매매차익 취득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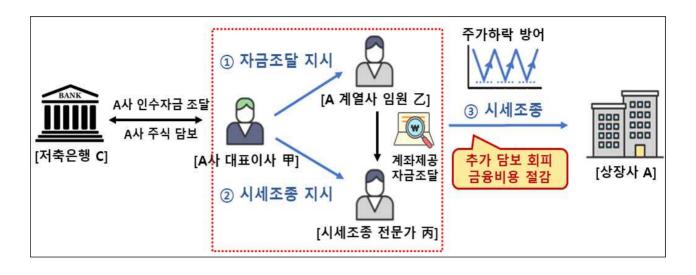
- □ 상장사 A사 미등기임원 甲은 A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'양해 각서(MOU) 체결' 이라는 미공개중요정보*를 직무상 지득하고
 - * 본 건에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'호재성 중요정보'에 해당
 - 동 **정보**가 **공개**되기 **전** 배우자 乙 명의의 **차명계좌**를 통해 A사 **주식**을 **매수**하여 부당이득을 수취
- □ 甲은 해당 주식을 6개월 이내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변동되어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누락 보고
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4조), 소유상황보고의무 위반(자본시장법 제173조) 혐의로 조치(甲)
- ◈ 임직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
- 임원 및 주요주주의 보유주식 변동이 있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, 6개월 내 단기매매차익 취득시 해당 차익을 회사에 반황해야 함
- ※ **등기임원**은 물론 회사의 **업무집행을 지시**할 **권한**이 있는 **미등기 임원**도 내부자(임원) 범주에 포함되어 자본시장법상 **불공정거래 규제대상**에 해당

❸ 부정거래 (허위 공시)



- □ 甲은 乙(A사 대표이사, 최대주주)과 공모하여 A사의 제3자배정 유상 증자에 B사(甲 소유 비상장사) 명의로 참여하여 A사의 경영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최대주주가 된 뒤,
 - 운영자금 마련 목적의 A사 **유상증자 납입금을 횡령**하여 乙이 보유 하고 있던 A사 **구주 양수자금**으로 **사용**
- □ 이러한 과정에서 A사는 **무자본 M&A**를 통해 **실질적으로 경영권이 변경**(乙→甲)되었음에도 甲·乙은 경영권 변동 없이 **대규모 투자자금이 유치**되는 것처럼 **허위공시**함으로써 A사의 **주가**를 **부양**한 뒤,
 - 甲이 乙로부터 양수한 A사 주식을 다수 계좌로 분산시켜 **고가**에 **장내매도**하여 **이익을 취득**
- ➡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8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)
- ◈ 자금사용 목적 및 경영권 참여 목적 여부에 관한 사항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허위기재한 것은 '주요사항의 거짓기재 또는 표시'에 해당
- 한편,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공시를 하는 행위는 '부정한 수단, 계획 또는 기교'에 해당할 수 있음
- ※ 자본시장법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지시한 실질사주를 내부자(임원)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 해당

4 시세조종 (시세고정)



- □ 甲은 상장사 A사 주식을 담보로 C 저축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아 A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, A사 주가가 하락하자 담보가액을 유지하고 추가담보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
 - A사 계열사 임원 乙에게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하고 乙 명의 증권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증권계좌를 丙(시세조종 전문가)에게 제공 하도록 지시하였으며,
 - 丙은 甲의 주도에 따라 고가매수, 시·종가관여 등의 시세조종 주문을제출하여 주가를 반대매매 가격 이상으로 유지
- ➡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(자본시장법 제176조) 혐의로 조치(甲·乙·丙)
- ◈ 담보주식의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행위는 '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시세조종행위'에 해당하며,
 - 추가담보 납부 회피를 통한 비용 절감액은 **불공정거래의 동기** 및 목적이 되는 거래에서 **발생**한 **이익**으로서 **부당이득에 포함**

[☞]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